

죽임/죽게 내버려둠에 관한 레이첼스의 견해에 대하여

구영모*

I

이 글에서 필자는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둠 사이의 구분이 가지는 도덕적 관련성(the moral relevance of the distinction between killing and letting die)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필자는 영어권 철학자들 사이에서 표준적으로 쓰이고 있는 표현인 ‘the distinction between killing and letting die’를 우리말로 옮김에 있어서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둠 사이의 구분’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하였다. 여기서 ‘killing’이란 한 도덕 행위자가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 — 특별히, 그 생명체가 사람일 경우를 일컬어 ‘살인’이라고 한다 — 을 가리킨다. 이 때 ‘killing’은 그 죽임에 있어서 우리말 표현 ‘죽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편, 그 행위자가 누군가를 ‘let die’ 한다함은 그 행위자가 그 대상이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이다. 필자는 죽도록 放置한다는 의미에서 ‘죽게 내버려 둠’이라는 표현을 택하였다. 이 글의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필자는 ‘죽임/죽게 내버려 둠’이라는 번역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필자가 번역어로 ‘죽임/죽게 내버려 둠’을 제안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애당초 필자는 ‘killing’과 ‘letting die’의 번역어로서 각각 ‘죽임’과 ‘죽게 허용함’을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후 필자는 ‘letting die’의 번역어로서 ‘죽게 허용함’이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죽게 허

* 철학사상연구소 박사후 과정

용함’이라는 번역어는 문제의 구분에 대해 언어상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¹⁾ 그러한 혼란은 다시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우리말 표현 ‘허용하다’가 가지는 다의성에 기인한 혼란인 반면, 둘째는 ‘허용하다’라는 표현이 가지는 보다 균원적인 애매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죽임/죽게 내버려 둠 사이의 구분은 영미 철학자들 사이에서 doing harm/allowing harm 사이의 구분과 동일한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필자가 애초에 ‘letting die’의 번역어로서 ’죽게 허용함‘을 선택했던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letting someone die’와 ‘allowing someone to die’라는 표현들이 영어권 철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doing harm/allowing harm의 구분을 해(害)를 행함/해를 허용함 사이의 구분으로서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구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문제의 구분 자체가 함축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우리말의 ‘허용’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다의성으로 인해 그 구분이 실제보다 훨씬 덜 명확해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의 주제인 죽임/죽게 내버려둠 사이 구분의 도덕적 관련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문제의 구분이 야기할지도 모르는 언어상의 혼란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글의 도입부를 삼고자 한다.

우리말 ‘허용하다’로 옮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이 적어도 서너 가지 있는 것 같다. to permit, to allow, to approve, to tolerate 등등. 이들 중 ‘to permit’과 ‘to allow’ 사이의 구분이 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만약 이 두 표현들이 모두 우리말의 ‘허용하다’로 번역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가 간과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철학, 특별히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to permit’이라는 표현은 법적 혹은 도덕적으로

1) 황경식 교수님의 지적 (1996년 11월 한국 사회·윤리학회) 덕분에 필자는 이 점에 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로 허용될 수 있다(legally or morally permissible)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반하여, ‘to allow’는 법적, 도덕적 허용과는 일절 관계가 없다. 만약 필자가 ‘A의 죽음이 B에 의해 허용되었다’라는 진술을 한다면, 독자들은 그것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명제가 A가 B에 의해서 죽도록 내버려 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B가 A의 죽음을 법적, 도덕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더군다나 ‘허용하다’라는 말의 애매성은 단지 우리말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자연 언어들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영어 표현 ‘to allow’에는 적어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 같다. 우선,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 이런 의미로 어떤 사건 X를 allow 한다는 것은 다음의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 즉, X를 가져올 일련의 사건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문제의 도덕 행위자에게는 X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함정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도록 allow 하는 것이다. 하지만, allow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푸트가 논증하기를,

그것은 능력을 부여하는 것(enabling)과 대체로 동등한 부류의 허용(allowing)이다. 이 경우의 핵심을 말하자면 일련의 사건들을 제지하고 있는 장애물의 제거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마개를 뽑아서 물이 흐르게 내버려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열어 놓아 동물이 밖으로 뛰쳐나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 것이며, 그런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어 그를 자립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²⁾

2) Phillipa Foot,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the Double Effect”, 원래는 *Oxford Review*, No. 5(1967)에 게재, 후에 *Virtues and Vices*(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에 재수록, p. 26, 『사회윤리의 제문제』(1983) 서광사, p. 93

첫 번째 의미의 allow는 무위(inaction)와 관련이 있는 반면,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경우들에서 행위자는 결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act)한다. 이런 의미의 allow에는, 첫번째 의미와는 달리, 간여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letting die)은 allow의 두 의미들 중 첫번째 것보다 두번째 것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철학과의 김 양이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해 그녀의 생명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만약 김 양의 의사와 가족들이 산소호흡기를 빼어내자 그녀가 사망했다면, 우리는 이를 가리켜 그들이 김 양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let her die)라고 말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할 때, 필자는 ‘killing/letting die 사이의 구분’의 번역어로서 ‘죽임/죽게 허용함 사이의 구분’을 선택하는 것은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 덧붙여, 필자는 ‘killing/letting die 사이의 구분’의 적절한 번역어로서 ‘죽임/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분’을 제안한다.

II

죽임/죽도록 내버려둠 사이 구분의 도덕적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로, 문제의 구분이 가지는 도덕적 관련성에 관하여 회의를 품는 사람들에게, 그 구분의 옹호자는 우선 어떻게(how) 죽임과 죽게 허용함 사이에 구분선이 그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적 설명(factual account) 또는 비도덕적 설명(nonmoral account)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그 옹호자는 왜(why) 그 구분이 우리가 그것에 전형적으로 귀속시키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야 하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이것은 흔히 도덕적 설명(moral account)이라고 불리운다. 이 글에서 필자의 논의는 두번째 국면에 한정될 것이다.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에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한 쌍의 케이스들을 고려하려고 한다. 그 두 케이스들에서 우리의 직관적 반응의 지침이 되는 여섯 가지 요소들은 동등도록 고안되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그 케이스들에 관해서 서로 다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차이 때문이지, 다른 요소들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기 위함이다.

그 여섯 가지 요소들 중의 첫번째로 행위자에게 드는 비용(cost)을 꼽을 수 있겠다. 죽임을 삼가는 것이 행위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는 반면에,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는 전형적으로 비용이 따른다. 일례로, 기근구제(famine relief)를 목적으로 하는 자선단체에 성금을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두번째는, 죽음이 의도되었는가(intended) 아니면 단지 예견되었는가(foreseen) 하는 점이다. 죽임의 경우, 정당방위를 제외한다면, 행위자는 전형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의도하는 데 반해서, 죽게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음으로 동기(motive)를 들 수 있겠다. 죽임은 흔히 악한 동기, 예를 들어, 타인이 죽기를 욕구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자선단체에 돈을 보내지 않는 동기들이란 기껏해야 나태, 냉담, 이기심 따위들이다. 결과가 얼마나 가혹한가, 행위자의 행동에 의해 죽음이 초래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들도 여섯가지 요소들에 포함된다. 마지막 여섯번째 요소로 초래된 결과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만약 내가 타인을 죽인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성금기탁을 통하여 기근 등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제, 아래의 케이스들을 고려해보자. 다음 한 쌍의 케이스들은 하나가 죽임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하나가 죽게 내버려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의 여섯 가지 요소들이 서로 동등하도록 고안되었다.

[케이스 1] 스미스는 만약 그의 여섯 살 밖이 사촌이 사망한다면 엄청난 액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 어느 날 저녁 그 아이가 목욕을 하는 동안, 스미스는 욕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아이를 의사시킨다. 그리고 스미스는 마치 사고로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다.³⁾

[케이스 2] 존스는 만약 여섯 살 밖이 그의 사촌이 사망한다면 엄청난 액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존스는 그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일 계획으로 잡입한다. 그런데, 욕실에 들어서는 순간 존스는 그 아이가 머리를 찔고 넘어지면서 그 아이의 얼굴이 물에 잠기는 것을 목격한다. 존스는 속으로 기뻤다. 그는, 만약 필요하다면 그 아이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한 채, 그 옆에 대기하고 있다. 한 번의 작은 몸부림과 함께, 그 아이는 전적으로 혼자서 “사고로” 의사한다. 이때 존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다.⁴⁾

스미스가 그 아이를 죽이는 반면, 존스는 그 아이를 단지 죽게 내버려둔다. 그 외에는 어떠한 다른 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로, 만약 스미스가 그 아이 죽이기를 삼간다면, 이 때문에 스미스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스미스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존스가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을 삼간다면, 그 또한 그에게 엄청난 비용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스미스와 존스 모두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한다. 만약 스미스가 그 아이의 죽음을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 또는 목적 자체로서 사용하려고 의도한다면, 존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개인적 이익이라는 동기에서 행위한다는 점에서 스미스나 존스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네 번째, 두 사람 모두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어린아이가 의사한다. 다섯째, 스미스의 행위와 존

3) James Rachels,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원래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292, no. 2 (January, 1975)에 게재, 후에 *Ethics: Problems & Principles*, eds. Fischer & Ravizza, Harcourt Brace Javanovich (1992)에 재수록 p. 114, 필자의 번역

4) Rachels (1975), 앞의 책 p. 114 필자의 번역

스의 반응이 각 케이스에서 아이의 죽음을 결과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각 케이스에서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제 문제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스미스나 존스 중 더 나은 행위를 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직관이 주는 대답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존스의 행위나 스미스의 행위나 똑같이 비난받을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스미스의 행위가 존스의 행위와 도덕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에 내재적인 도덕적 차이가 내재적으로(intrinsically) 존재한다는 우리의 안이한 직관을 불신하는 것이다. 과연,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에 관한 우리의 직관은 다양한 경우들에 있어서 일관된 대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들을 생각해보자.

[케이스 3] 여섯 명의 사람들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다. 그 중 다섯 명은 무리 지어서 나의 왼쪽편 저만치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혼자서 내 오른편 저만치에서 허우적대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내 보트로) 왼편의 그 다섯 명이나 오른편의 한 명만을 구할 수 있을뿐, 여섯 명을 모두 다 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명백히, 내가 다섯 명의 생명들을 구하고 그리하여 나머지 한 명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것이다.⁵⁾

[케이스 4] 다섯 명의 위독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특정한 개인을 살해하여 그의 사체로부터 혈청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고한 그 개인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설령 우리가 그 다섯 명의 위독한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무고한 그 개인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섯 명의 폭숨을 빼앗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하다.⁶⁾

5) Phillipa Foot, “Morality, Action and Outcome”, *Morality and Objectivity*, Ted Honderich ed., Routledge and Kegan Paul (1985), p. 23 필자의 번역

6) Phillipa Foot,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the Double Effect”, 원래는 *Oxford Review*, No. 5 (1967)에 게재, 후에 *Virtues and*

직관적으로, 위의 케이스들은 우리에게 죽임과 죽게 내버려둘 사이에 도덕적 차이가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⁷⁾ 그러나 우리는 앞서 한 쌍의 케이스들(케이스 1, 케이스 2)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 직관이 죽임과 죽게 내버려둘 사이의 차이가 부인되는 경우를 보았다. 만약 이 특정 문제에 관한 우리의 직관이 죽임/죽게 내버려둠의 구분에 관하여 어떤 때에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다가 다른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도덕이론 확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직관에 의존하지 않는 편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직관이란 결국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죽임과 죽게 내버려둘 사이의 구분이 갖는 도덕적 중요성을 부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제안했던 레이첼스(James Rachels)는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그에 의하면, 죽임과 죽게 내버려둘은 도덕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직관에 의해 보여지기 때문에 안락사의 경우와 같이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데에는 아마도 결과주의(consequentialism)가 옳다. 레이첼스는 케이스 1의 스미스와 케이스 2의 존스 모두 동일한 동기로부터 행위했고 동일한 개인적 이득을 위해 행위했으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논증한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존스가 재판정에서 “결국, 나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거기에 서서 그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두었

Vic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에 재수록, p. 24, 필자의 번역

7) 케이스 3에서 내가 여섯번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정당화 된다. 왜냐하면, 내가 다섯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내가 이전에 행했던 바와 아무런 관계 없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죽도록 방치함으로써 나는 단지 이미 진행중인 죽음의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며, 나의 반응은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나의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케이스 3은 죽도록 내버려둠의 전형적 경우이다. 한편, 케이스 4는 명백히 죽임의 경우이고 따라서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을 뿐입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한댔자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레이첼스는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분이 그 자체로서 삶과 죽음에 관한 행동의 도덕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낳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⁸⁾

적절하게도, 레이첼스는 의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안락사의 경우들이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의사들은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거나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린아이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는다. 의사들이 관계하는 경우들이란, 환자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산다는 것이 그 환자에게 더이상 소용이 없는 경우들 뿐이다. 하지만 레이첼스는 그런 경우들에서 조차도 자신의 논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에는 어떠한 내재적인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한 의사가 인도적인 이유에서 한 환자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말해서, 그 의사가 인도적 이유에서 그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 의사의 결정이 틀렸다면, 예를 들어, 그 환자의 질환이 사실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 결정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 무엇이든간에 똑같이 유감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의사의 결정이 옳았다면, 그 의사가 사용했던 방법은 그 자체로서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⁹⁾ 어쨌든, 여기에서 레이첼스의 논점은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분이 도덕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분이므로 그것에 근거하여서는 능동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수동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사이에 어떠한 도덕적 경계선도 그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문제의 구분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심리적 영향들(psychological effects)을 배제해야만 한다는 레이첼스의 제안은 적

8) Rachels, “Euthanasia, Killing, and Letting Die”, 원래는 *Ethical Issues Relating to Life and Death*, John Ladd ed., Oxford Univ. Press (1979)에 게재, 후에 *Morality in Practice*, James P. Sterba ed., Wdosworth Publishing Company (1988)에 재수록 p. 189, 또한 Rachels (1975), 앞의 책 p. 114

9) Rachels (1975), 앞의 책, pp. 114-115

절한 것 같다. 그에 따르면, 죽임이 죽게 내버려둠에 비하여 내재적으로 더 나쁜가 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실제 살인의 경우들이 대부분의 실제 죽게 방치함의 경우들 보다 더 나쁜가 하는 문제와 구별되어져야만 한다. 실제 죽임의 경우들을 접하면서 우리들은 흔히 격분을 느낀다. 그러나 죽게 내버려둠에 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라곤 온통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수행된 의사들의 행위들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임에 그 자체로서 죽게 내버려둠에 비하여 도덕적으로 더 나쁜 어떤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잘못 믿게된다.¹⁰⁾

그런데, 레이첼스가 죽임/죽게 내버려둠의 구분을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눈 심리적 영향을 피해야만 한다고 제안할 때, 그는 자신의 주장에서도 자신이 행하는 비판에 종속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 같다. 이것은 왜냐하면, 케이스 1과 케이스 2처럼 레이첼스가 죽임/죽게 내버려둠 구분의 도덕적 중요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들이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보이는 까닭은 심리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특정 케이스들에 있어서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인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능한 심리적 영향들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과연,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서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이 도덕적으로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동등하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비록 우리가 죽임/죽게 내버려둠 이외의 요소들이 동등하도록 고안된 한 쌍의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에 어떠한 도덕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뒤따라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점을 드러내려면, 하나의 반례로서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에 도덕적 차이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우리의 직관을 뒷받침하는 케이스 3과 케이스 4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논점을 입증하는 데 다른 방법들이 있을지

10) Rachels (1975), 앞의 책, p. 115

도 모른다. 어쩌면, 왜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 케이스 1의 스미스와 케이스 2의 존스가 둘 다 똑같이 나쁘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는지를 정당화해주는 설명들이 존재할런지도 모른다.

III

필자는 앞절에서 레이첼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그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도덕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해했었다. 이러한 레이첼스의 주장을 대단히 강한(strong)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동등한 도덕적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주장이 옹호되려면 다양한 경우들에서 그 주장의 내용이 우리의 도덕 판단들과 일치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만약 반례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 주장은 논박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대해 레이첼스는 그것이 자신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할런지도 모르겠다. 과연, 레이첼스류의 주장들에는 또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같다. 그런 해석에 따르자면 죽임/죽게 내버려둠 구분의 도덕적 중요성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구분은 단지 회의의 대상일 뿐이다. 필자는 앞의 것을 강한 해석(strong interpretation)이라고 부르고, 뒤의 것을 약한 해석(weak interpretation)이라고 하겠다. 강한 해석에 비교하여 약한 해석이 주장하는 바는 훨씬 완화된 어떤 것이다. 그 주장에 의하면,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에는 어떠한 도덕적으로 중요한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이 동등한 도덕적 평가를 받아마땅한 경우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을 확신시키려면, 죽임/죽게 내버려둠 구분의 도덕적 중요성을 옹호하려는 사람은 왜 그 구분이 도덕적으로 중요한지에 관해 적극적인(positive) 설명들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약한 해석이 논박된다면 당신은 강한 해석 역시

논파하는 것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어떤 한 주장을 논박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보다 더 강한 주장들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없고, 위의 강한 해석은 약한 해석보다 훨씬 더 강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임/죽게 내버려 둠 구분의 도덕적 중요성에 관한 적극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¹¹⁾ 이 글에서는 우리의 논의를 강한 해석에만 한정하도록 하자.

강하게 해석된 레이첼스의 주장에 대해,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둠 구분의 도덕적 중요성에 관한 그럴듯한 설명 방식이 하나 있다. 그것에 따르면, 케이스 1의 죽임과 케이스 2의 죽게 내버려 둠은 그 예들에 관련된 동기들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혐오로 말미암아 가면씌워져(masked) 있다는 것이다.¹²⁾ (조카 아이가 죽었으면 하는) 악의에 찬 동기들과 가증스러운 의도들이 스미스와 존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순간,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둠의 구분에 관한 우리의 도덕 판단은 마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들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나의 아내는 치킨 테리야키(Chicken Teriyaki)라는 음식을 만들기 좋아한다. 그 음식의 양념(marinade)에는 여러 재료들이 사용된다. 물, 식초, 정종(Sake), 고추장, 간장, 마늘가루 등등. 고급 정종을 사용하거나 싸구려 정종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 양념 맛에는 현격한 차이가 생겨난다. 그러나 치킨 테리야끼를 맵게 해달라는 나의 주문에 따라 나의 아내는 고추장을 많이 사용해서 그 음식을 만든다. 이때 나의 아내는 고급 정종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음식이 너무 맵기 때문에 양념에 고급 정종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싸구려 정종을 쓰든지 맛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된 다량의 고추장에 양에 의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양념들,

11) 이러한 시도와 어려움의 예로서, 필자의 논문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둠의 구분에 관하여」(한국사회·윤리학회 발표문, 1996년 11월) III을 참조하라.

12) 이 용어는 Richard Trammell, "Saving Life and Taking Life", *Journal of Philosophy*, March, 1975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Malm 은 'sledgehammere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Heidi Malm, "Killing, Letting Die, and Simple Conflict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summer 1989

즉 고급 정종을 사용한 양념과 싸구려 정종을 사용한 양념, 사이에 존재하는 맛의 차이가 ‘가면씌워져’ 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두 양념들 간에 맛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재료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념들 간에 맛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미량의 고추장과 고급 정종을 재료로 만든 양념과 동일한 양의 고추장에다 싸구려 정종을 써서 만든 양념 간에는, 적어도, 맛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설령 우리가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서 스미스와 존스가 모두 똑같이 사악하다는 도덕 판단에 이르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 판단들이 심리적 가면씌우기 영향들에 의해서 오도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므로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서 보여지는 도덕적 판단의 等值(equivalence)는 우리의 도덕판단들이란 항상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고전적인 예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다. 레이첼스와 마찬가지로, 툴리(Michael Tooley)는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도덕적 차이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다. 툴리의 예를 고려해보자.

[케이스 5] 부자 아버지 슬하의 두 아들은 [유산을 탐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 맏아들이 독립적으로 아버지의 위스키에 독약을 탔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위스키에 독약을 타려고 하다가 형이 이미 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아버지는 독약이 든 위스키를 마시고 죽었다. 이 경우 맏아들은 아버지를 죽였는데[독살] 반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위스키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해독제까지도 가지고 있었건만 수수방관하였고, 그리하여 아버지를 죽도록 내버려두었다.¹³⁾

13) Tooley, “An Irrelevant Consideration: Killing versus Letting Die”, *Ethics: Problems & Principles*, eds., Fischer & Ravizza, harcourt Brace Javanovich (1992), p. 108, originally published in *Killing and Letting*

이 경우 우리의 직관은 두 아들이 모두 똑같이 나쁘다는 것이고, 틀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에 어떠한 내재적 차이도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왜 우리의 도덕 직관상 두 아들의 행위들이 모두 똑같이 비난받을만한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해 하나의 설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두 아들의 놀랍도록 가증스러운 동기들과 아버지의 독살이라는 끔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면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도덕 직관들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바람에 도덕적 자위에 있어서 두 아들의 행위들이 점하는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위의 논의들로부터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구분의 도덕적 중요성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즉, 특정한 경우들에서 (사악한 동기 등에 의해)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차이가 ‘가면씌워져’ 있다는 사실이, 왜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도덕적 차이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IV

이상에서 필자는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분이 가지는 도덕적 중요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구분의 중요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논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할법한 하나의 설명방식에 관해 논의했다. 만약 회의론자들의 주장대로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에 어떠한 도덕적 구분도 있을 수 없다면, 우리는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위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우리는 善(the good)을 전반적으로 장려해야만 한다는 주장(결과주의, 특히 공리주의)이 결국에는 옳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분이 도덕적으로 중요한가 여부의 문제는 최선의 도덕 이론이 그 구조에 있어서 결과주의적인 것

이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의무론적(deontological)인 것이어야만 하는가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된다는 점을 간파해야만 한다. 이 두 입장의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최근 20년간의 영미 도덕 철학을 지배해 왔다. 한편, 죽임/죽게 내버려둠 구분에 대한 논의의 가치는 이론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안락사와 임신 중절등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들을 비롯하여, 부족한 의료자원의 분배문제, 기근구제, 혹은 사람들의 생존이 재화들의 제한적인 공급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경우들에 있어서 행위의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필자가 믿기에,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분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될 또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